

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정 2020. 6. 12.

개정 2021. 3. 17.

개정 2021. 6. 18.

개정 2021. 8. 1.

개정 2023. 2. 1.

개정 2023. 5. 15.

개정 2025. 2. 7.

개정 2026. 7. 1.

개정 2026. 9.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절차와 조직 등 관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등) 이 기준은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당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 또는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문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운영지침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우수한 품격과 품질, 디자인으로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설계자)를 설계공모의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자치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1. 신축·증축 및 개축 행위 등
2.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②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③ “사업계획 사전검토”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으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발주기관”이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⑤ “공공건축심의”란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으로 건축기획 적정성,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여부, 설계지침서,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⑥ “주관부서”란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⑦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사업(용역)발주, 계약, 사업(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공모부서”란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⑨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공모 전 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⑩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하 “공모안”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입상작 또는 입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2 제3항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준용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5팀으로 구성하여 팀별로 운영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은 추가, 변경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실현분과위원회(이하 “정책실현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5명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각 팀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팀의 운영위원 2~3명을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 역량있는 건축사
 2.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3. 부산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4. 정책실현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운영위원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5.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 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아울러, 임기 만료시점에 진행 중인 설계공모가 있는 경우 해당 설계공모의 당선자(작) 결정시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운영위원이 자진 사퇴 등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2항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각 사업별 순번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모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설계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설계 공모 완료까지 설계공모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설계공모 완료 후에도 필요시 임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설계공모 추진 일정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설계공모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들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설계지침서 작성시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해야 하고, 설계지침서 작성(공모 방식 및 일정 포함), 질의답변서 작성, 심사기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날인 후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 ⑤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 공모부서 담당 공무원(의뢰기관 포함)은 설계공모 및 행정절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지원해야 한다.
- ⑥ 공모부서 담당 팀장은 간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조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설계지침서 작성
 - 1. 현장확인, 사전검토 결과 및 공공건축심의 내용 반영 검토
 - 2. 설계공모의 방식, 참가자격, 일정 검토
 - 3. 제한 및 지명공모의 경우 제한(지명)기준, 절차, 운영방식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설계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② 공개설명회 운영 및 설계공모 질의답변에 관한 사항
- ③ 설계공모 심사기준(안) 작성 및 심사 사전회의 운영
 - 1. 설계공모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작성
 - 2.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 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

- ④ 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의2의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겸하며, 공모안에 대한 기술(사전)검토 후 심사 위원회에 보고
 - 1. 설계지침서, 관련 법규 등 적정 여부 검토 등
 - 2. 제안공모의 경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사전평가 포함
- ⑤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① 운영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설계지침서 작성 및 기술(사전)검토에 따른 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기준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자치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시로 의뢰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의뢰기관에서 각 위원(위원장 포함)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장 설계공모 시행공고

제9조(시행공고) 발주기관은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축 설계공모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및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재한다. 단, 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설계공모를 부산광역시에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기관에서 시행 공고 한다.

제10조(참가등록)

-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까지는 최소7일(제안공모 및 간이공모는 5일)이상으로 한다.

제11조(설계공모 참여설계자의 범위)

- ①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자는 국내 · 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다만, 해당 설계공모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 등록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참가 등록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다.
-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Licensed Architect)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 ④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경우,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⑤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업무정지 중인 건축사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 및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공동응모자 포함)
- ⑥ 설계공모 참가 등록 시 건축사 및 업체(이하 “설계공모 참가자”라 한다)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1개 공모안만 제출 가능하다.
- ⑦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기획 및 운영위원, 심사위원, 전문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제출도서의 간소화)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설계공모안 제출도서의 범위) 제출도서는 다음과 같고 사회적 비용의 경감, 지속 가능한 정책 부응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모별 설계지침서 작성시 추가(변경)할 수 있다.

①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비 고
설계설명서(제안설명서)	A3 Size 300MB 이하	pdf	
담당건축사 경력(실적) 확인서	A4 Size	pdf	공모유형에 따라 필요시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홈페이지 게재용 이미지	300dpi 이상 각 5MB 이하	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 이미지는 다른이미지와 중복가능)

② 설계설명서(제안설명서)

1. A3용지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배경무늬 사용불가)
2. 전체 매수는 30매 이내(간이공모는 4매 이내)로 정하고,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함)
3. 기본도면 : 조감도 또는 투시도(컷수는 공모별로 정함, 제안공모는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 미포함), 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 2면 이상, 종·횡단면도 각 1면 이상, 기타 필요한 도면 등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조감도 및 투시도는 표현기법에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과도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만 허용한다. 단 건축물의 스케일과 비례 등이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재질과 표현 방법이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그리고 제출된 이미지가 설계설명서의 내용(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리 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에 필요할 경우 제출 도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출도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심사위원과 설계공모 참가자 간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질의응답)

- ① 설계공모 참가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그 답변 내용을 모든 설계공모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질의 내용이 복잡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과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공모안의 제출)

- ①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지침서에 따라 공고된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도서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익명의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유지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될 수 있다.
- ③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적격·실격처리 될 수 있다.
1. 설계 시 높이, 층수, 입면, 동(棟)의 배치, 총 공사비 등에서 현저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 설계지침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3.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익명성 위반인 경우
 4.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6.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7.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8.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9.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④ 제출도서 등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로 제출해야 하고 현장방문이나 우편 접수,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없다.
- ⑤ 모든 파일은 제출기한 내 홈페이지에 업로드 완료해야 하며, 업로드 미완료시 제출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제출된 공모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제4장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

제16조(심사위원회 구성) 공모부서는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9명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인원수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사업은 최소 7명 이상으로, 20억 미만인 사업은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며,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공모별 특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결원에 대비하기 위해 심사위원 인원수의 30%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互選)한다.
- ③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분야 검토를 위해 필요시 관련 분야별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발주기관이 추천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심사에 참석하여 검토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공모부서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심사위원 선정을 요청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운영지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⑥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 ⑦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기준은 해당년도 1.1~12.31로 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위원 위촉 사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는 심사횟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 ⑧ 공모부서는 **정보체계를** 통해 심사위원별 설계공모 심사횟수(심사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위촉사실 기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서면확인서를 제출받고, 심사 당일 서면확인서에 본인 확인(서명)토록 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우리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심사일 이후에 위반사실을 안 경우 심사위원이 제7항 위반이더라도 해당 공모의 심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⑨ 발주기관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에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⑩ 심사위원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설계공모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 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 ⑪ 심사위원은 제10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신청서를 공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⑫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근거자료를 공모부서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⑬ 다른 사업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에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⑭ 발주기관의 장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⑮ 발주기관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 ⑫ 제5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가 2회 이상 심사위원 선정을 거부할 경우 심사위원 추천을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위원회 운영)

- ① 공모부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모안의 교부기간을 단축하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공모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진행 전 과정을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며 내용은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 ③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사전 접촉이 금지되며 사전접촉금지서 약서와 사전접촉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공모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모부서는 사전접촉 신고 시 해당 공모 참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⑥ 공모부서는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내용을 해당 공모 참가자의 소명서와 함께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제15조 제3항에 따라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설계공모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투표 심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운영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모 공고시 평가의 주안점을 제시해야 한다.

- ① 1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기술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 · 실격 등을 결정하고,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2. 심사기준 및 의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3.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② 2차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1. 발표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레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③ 공모부서는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 실격처리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서로 작성, 참석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 ⑧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해야 하며, 각 공모안의 심사(평가)의견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 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심사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심사(평가)의견서를 제출한다.

제19조(심사위원회의 역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 회의, 심사, 결정을 한다.

- ① 심사위원은 지역적 특성, 부지 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야 한다.
- ② 심사 전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로부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숙지 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설계 공모안 심사
 - 1. 공모안 사전 검토
 - 2. 기술검토 의견서, 공모안의 중대한 위반사항 검토 및 심사반영
 - 3.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전문 의견 검토 및 심사반영
 - 4. 토론을 통한 공모안 분석
 - 5.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안 검토
 - 6.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등 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 결정
 - 7. 심사위원별 공모안의 심사(평가)의견서 등 작성
 - 8.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9. 그 밖에 설계공모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① 공모부서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 및 [정보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1. 참석 심사위원 및 입상자 명단
 - 2. 심사위원별 실명을 포함한 투표결과(또는 평가점수) 및 이를 집계한 총괄표
 - 3. 모든 입상작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 4. 모든 입상작의 이미지
 - 5.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 및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

-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공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위원회 등 수당 및 여비 지급)

- ① 심사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전문의견 검토 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에서 정하는 별도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④ 각 자치구·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부산광역시로 설계공모 의뢰한 경우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의뢰기관에서 각 위원(위원장 포함)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방송·통신 등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의뢰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제22조(공모 비용의 보상)

- ①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 비용을 보상한다.
- ② 기타 입상자의 수와 순위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 ③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2.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4.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5. 기타 입상자가 동일한 순위인 경우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는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을 지급하고,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금액을 지급
- ④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하며, 시상금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 ⑤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제23조[저작권 및 출판 전시 등]

- ①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②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발주기관은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해당 설계 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내용은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 공고 시행한다.

제24조[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지명공모 특례]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지명공모를 실시하는 경우(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신진건축가상을 수상한 자에게 지명공모의 응모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6. 12.>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3. 1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6. 18.>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8. 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 2. 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5 .>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5조 제3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5. 2. 7.>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6. 7. 1.>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공모 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6.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전 제7조제5항 (심사위원 명단 추천)을 삭제하는 규정과 제16조제1항, 제16조제5항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의 적용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제16조제8항, 제20조제1항의 “정보체계”를 “세움터”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건축상 수상자에 대한 지명공모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24조 규정은 2026년 신진건축가상을 수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서식 목록표

구 분		서 식 명	대 상		
			참가자	심사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위촉)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운영위원용)			○
	1-2	설계공모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
지침서 작성	1-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결서			○
	1-4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
참가등록	2-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2-2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		
	2-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시행공고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는 경우)	○		
	2-4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제출마감일 심사위원 명단 공개하는 경우)	○		
	2-5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응모시)	○		
	2-6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 응모시)	○		
	2-7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2-8	보안각서	○		
	2-9	청렴서약서	○		
	2-10	참가확약서(지명공모)	○		
	2-11	기술응역이행 실적증명서(제한공모)	○		
기피신청	3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모안 접수	3-1	설계설명서 서식	○		
	3-2	제안설명서 서식	○		
	3-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필요시)	○		
	3-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		
기술검토	4-1	기술검토서-1(일반공모)			○
	4-2	기술검토서-2(제한공모)			○
	4-3	전문위원회 검토의견서			○
심사위원 (위촉)	5-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심사위원용)		○	
	5-2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심사위원용)		○	
	5-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심사위원용)		○	
	5-4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심사위원용)		○	
	5-5	심사위원 심사횟수 서면확인서(심사위원용)		○	
심사	5-6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	
	5-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심사위원용)		○	
	5-8	제척회피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심사위원용)		○	
	5-9	심사위원회 의결서		○	
	5-10	심사위원회 의결서(심사 제외 공모안)		○	
	5-11	작품 심사의견서(1차 심사용)		○	
	5-12	심사위원 투표(1차 심사용)		○	
	5-13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 심사용)		○	
	5-14	2차 심사대상 선정(1차 심사용)		○	
	5-15	공모안 발표(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천결과서		○	
	5-16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	
	5-17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	
	5-18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	
	5-19	최종 심사결과표		○	
	5-20	최종 심사보고서		○	

※ 공모별 특성에 맞도록 서식 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운영위원용]

본인은 설계공모 운영 관련 연락, 수당 지급(과세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설계공모 운영 관련 연락 및 수당 지급(과세활용)

2. 수집 및 이용(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이름, 나이, 주소, 소속,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 수당 지급 자료(개인 계좌 정보 등) 및 필요시 소득세법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보유기간

- 설계공모 운영 관련 개인정보 서류
- 필요시 세무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보유(이용)기간 : 5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보유기간에 따라 이용, 보유
- 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분쟁 대비기간(5년) 이후 지체없이 파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 일정기간 보유함

4. 기타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설계공모 운영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 위촉 및 운영위원회 구성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연번	구분	소속	자격	성명
1	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3	운영위원			
4	운영위원			

1. 본인은 『 』 설계공모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습득한 공무상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 』 설계공모의 운영에 있어 관계업체와의 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 』 설계공모의 심사 후에도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4. 본인은 보안사항 위반 등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5. 심사보고를 위한 기술검토는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음

[illegible]

202 년 월 일

소속 :

직 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결서

□ 공 모 명 :

의 결 내 용
안건 : 설계지침서 작성 등

☐ 운영위원(장) 서명

운영위원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운영위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1-4]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 일 시 : 202 . . . () : ~

☐ 장 소 :

☐ 안 건 :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연번	소 속	성 명	계좌번호	서명(날인)
1				
2				
3				
4				

☐ 참석 행정위원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1				
2				
3				
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대표, 직원, 외주업체 포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 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
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부산광역시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할 예정이며, 심사위원 명부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공동응모 협정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 ()』 설계공모를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명칭 등)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
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
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
하여 공동 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
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
(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
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0조 (탈퇴 등)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대표건축사 선임계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 년 월 일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공모안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7] 해당 없을 시 서식에 "해당없음"으로 작성 · 제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 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보안각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부산광역시의 「 」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 (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 년 월 일

☐ 설계공모 참여자 및 외부전문가 포함[illegible]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 서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산광역시시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모명 :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
』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참 가 학 약 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대표자 (사)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자격 및 면허사항			
공 동 참 여 자 (사)	업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자격 및 면허사항			

본인(팀)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 』에 참가를 확약
하며 참여자(사)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첨부

※ 참여하는 각 사의 필요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제출함

부산광역시장 귀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건축 설계공모 제출용				제출처	부산시 건축정책과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등)	대지면적, 연면적, 총공사비, 설계용역(계약금액) 등 기재						
용역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분	설계() 감리() 기타()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설계사무소명)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공모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용도,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3]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 공 모 명 :

☐ 기피위원

성 명	소 속	제척(기피) 사유

※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건립 설계공모 설 계 설 명 서

* 공모안 제출 시 A3(서식)으로 함

20 . . .

제출처 : 부산광역시(○○○○과)

= 목 차 =

※ 유의사항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제공된 서식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준수하되, "3. 공간별 면적표"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6. 계획개념 및 분야별 설계주안점"에 대한 쪽수 및 서식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2. 도면을 포함한 설계내용을 00쪽 이내에서 지침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1. 건축 개요

항 목		설 계 내 용	비 고
건 물 개 요	건 물 명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도 로 현 황		
	용 도		건축법상 용도
	대 지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기준연면적의 %
	지상연면적 (용적률산정용)	m ²	
	건 축 면 적	m ²	
	건 폐 율	%	법정 : % 이하 법정 : % 이하
	용 적 률	%	법정 : % 이하 법정 : % 이하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주요외장재		
조 경 개 요			계획 및 법정 조경면적 근거 제시
주 차 개 요			계획 및 법정 주차대수 근거 제시
오 수 처 리 시 설			
주 요 설 비 개 요			
기 타			

2. 층별 면적표

층 별		면 적 (㎡)	주요 공간 또는 실별 면적(㎡)
지 상			
	소계		
지 하			
	소계		
합계			

※ 계획안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공간별 면적표 (스페이스 프로그램 기준)

소요 공간		계 획		지 침 (지정된 경우)		비 고
		개 소	소요 면적 (m ²)	개 소	기 준 면적 (m ²)	
공 용 면 적						
연 면 적 총 계						

※ 설계공모 참가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4. 주요 법규 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항 목	법 정 기 준	적법 여부
		설 계 내 용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의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 항목은 예시이며 응모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5.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구분	공 종 명	직접공사비	m²당 금액	구성비 (%)
건축공사	소 계			
	가설/철거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 잡공사			
토목공사(부대토목)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전기설비공사(소방포함)				
정보통신공사				
폐기물처리비				
기타(기반시설 등)				
합 계				
제경비 (직접공사비 30% 이상)				
부 가 세 (10%)				
총 공사 금액				

※ 설계공모 참가자의 계획안에 따라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6. 계획개념 및 분야별 설계 주안점

계획개념, 공간 프로그램 제안, 동선계획, 주차계획은 반드시 포함하고 분야별 설계의도·주안점 등을 제시한다.

6-○. ○○○○○○

6-○. ○○○○○○

건립 건축설계 제안공모 제안 설명서

* 공모안제출 시 A3(서식)으로 함

20 . . .

제출처 : 부산광역시(○○○○과)

= 목 차 =

※ 유의사항

1.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제공된 서식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준수한다.
2. 제안서 내용을 00쪽 이내에서 지침서의 작성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0쪽)

(담당건축사의 작품 포트폴리오)

※ 유의사항 : 프로젝트 이름과 발주처는 익명 처리한다(예시 : ○○○○ 설계용역)

간 지

2. 수행계획 및 방법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0쪽)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0쪽 이내)

다. 수행계획 (0쪽 이내)

[서식 3-3] (필요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설계공모 참가자용)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휴대전화	
근무처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경력현황

자격 면허	취득일(년월일)	자 격 명	등록(인가)번호	등록(인가)기관
현재 까지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 (유사 프로젝트) 실적현황

연번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실적내용				용역 금액
				계약기간	참여기간	공동도급 여부	담당업무	
1								
2								
3								
4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함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00 호 00시설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의 합계가 (사업연면적의 1/3)㎡이상인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 』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있음()	· 위 원 명 : · 일시/장소 :	

202 년 월 일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동응모업체(자) or 건축사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건립 설계공모 기술검토서

* 심사기호 :

구 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지침검토		연면적, 층수 허용범위 준수		[]적합 []부적합
		실별 면적 허용범위 준수		[]적합 []부적합
		스페이스 프로그램 준수		[]적합 []부적합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작성기준 검 토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적합 []부적합
		설계설명서 작성 기준 준수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 여부		[]적합 []부적합
		투시도/조감도의 과도한 왜곡		[]적합 []부적합
설계 도서 법규 검토	대지 및 도로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 []부적합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적합 []부적합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적합 []부적합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적합 []부적합
		복도설치		[]적합 []부적합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적합 []부적합
		건축물의 용적률		[]적합 []부적합
	거리이격	대지안의 공지		[]적합 []부적합
		경계선부근의 건축		[]적합 []부적합
	높이제한	일조 확보 높이 제한		[]적합 []부적합
	지하층	지하층 구조 및 면적 등		[]적합 []부적합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적합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부적합
실격 기준 검토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중대한 법규 위반		[]적합 []부적합
		설계지침서 요구사항의 과도한 초과/미달, 심각한 누락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인 경우		[]적합 []부적합
		대상 부지 경계·면적 초과,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적합 []부적합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		[]적합 []부적합
		참가등록 자격 위반 여부		[]적합 []부적합

※ 항목은 예시이며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기술검토 의견	
실격의견	
기타사항	

202 년 월 일

건립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서식 4-2] (기술검토서-2)(제안공모)

건립 설계공모 기술검토서

(심사기호 :)

구 분		검토내용	관련규정	검토결과
지침검토		공모범위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설계의 주안점 준수여부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작성기준 검 토		제출도서 현저한 초과/누락		[]적합 []부적합
		제안설명서 작성기준 준수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익명성 위반 여부		[]적합 []부적합
		투시도/조감도의 과도한 왜곡		[]적합 []부적합
도서 법규 검토	건축선, 조경, 공개공지, 대지안의공지			[]적합 []부적합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적합 []부적합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적합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부적합
실격 기준 검토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중대한 법규 위반		[]적합 []부적합
		설계지침서 요구사항의 과도한 초과/미달, 심각한 누락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적합 []부적합
		제출도서 등 익명성 위반인 경우		[]적합 []부적합
		대상 부지 경계·면적 초과,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적합 []부적합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		[]적합 []부적합
		참가등록 자격 위반 여부		[]적합 []부적합
설계자의 경험·역량 사전평가 의견				
기술검토 의견				
실격의견				
기타사항				

※ 항목은 예시이며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건립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위 원

(서명·날인)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서식 4-3]

설계공모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서

□ 공 모 명 : (심사기호 :)

구 분	내 용	비 고

202 년 월 일

건립 설계공모 전문위원회 위원

(서명·날인)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설계공모 심사업무 관련 연락, 심사수당 지급(과세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설계공모 심사업무 관련 연락 및 심사수당 지급(과세활용)

2. 수집 및 이용(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이름, 나이, 주소, 소속,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 수당 지급 자료(개인 계좌 정보 등) 및 필요시 소득세법 근거 주민등록번호 수집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보유기간

- 설계공모 심사업무 관련 개인정보 서류
- 필요시 세무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 보유(이용)기간 : 5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 보유기간에 따라 이용, 보유
- 수당 지급 및 세무 신고 등 과세 활용, 분쟁 대비기간(5년) 이후 지체없이 파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후 일정기간 보유함

4. 기타

-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이용 및 제공하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서약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 』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구성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심사위원	1			위원장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예비-1
	9			예비-2

※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예시)임

- 『 』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공개심사),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에 동의함.
- 『 』 설계공모 참가자 등과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함.
- 심사진행 및 심사후에도 심사와 관련된 기술검토서, 심사진행과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 공개심사 이외의 심사와 관련하여 보안사항 위반 및 사전접촉 등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운영위원회 기술검토보고서의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음.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함에 동의함
- 심사위원이 심사총량제를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간 우리 시 심사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음에 동의함

상기사항을 확인하고, 『 』 설계공모 심사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심사위원용]

1. 본인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자 등과 사전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공모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 등 입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3.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설명 및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거부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할 때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건축 설계공모 사전접촉 관련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내지 제7항

※ 사전접촉이란 시행 공고 이후부터 최종 심사 이전까지의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2.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물품·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연구·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 사전접촉 발생 시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4]

심사위원 회피 신청서

[심사위원용]

본 위원은 아래 설계공모 심사에서 자진 회피코자 합니다.

☐ 공 모 명 :

☐ 회피위원

성 명	소 속	회피 사유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날인)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귀중

[서식 5-5]

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횟수 서면확인서

1. 본인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 』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위촉됨에 따라 본 심사위원 위촉을 포함한 심사위원 위촉 횟수를 아래와 같이 확인·제출하며, 귀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 심사위원 위촉 횟수

연번	발주기관	공 모 명	202 년 (위촉 횟수 숫자 기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시)	00교육청	000학교 리모델링 사업	1 예비											
	00광역시	건설사업		1 본										
	00공사	건설사업				1 본								
연간 총 심사위원 위촉사실 횟수			회/202 년											
(참고)예비심사위원 위촉사실 횟수			회/202 년											

※ 타 기관의 설계공모 포함, 실제 심사 참여 무관히 위촉사실 기준, 예비는 심사총량제에 미포함,
※ 2023년의 경우 4월 1일 이후 설계공모 공고 기준으로 심사횟수 12회 산정

3.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본인의 심사위촉 사실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귀 시에 변경사항을 작성·제출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4. 위 확인서 작성 및 확인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배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상기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변경이 있다면 변경사항을 추가 기재)

1차 심사일 202 년 월 일	2차 심사일 202 년 월 일
소 속 :	소 속 :
성 명 : (날인·서명)	성 명 : (날인·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 일 시 : 202 . . . () : ~

☐ 장 소 :

☐ 안 건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연번	소 속	성 명	계좌번호	서명(날인)
1				
2				
3				
4				
5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연번	소 속	성 명	계좌번호	서명(날인)
1				
2				
3				
4				

☐ 참석 행정위원

연번	소 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날인)
1				
2				
3				
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 건립』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업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처벌받음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있음()	· 업 체 명 : · 일시장소 :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 확인서

[심사위원용]

본인은 『 』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제척사유를 확인하였으며,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 안전에서 회피함을 확약하며, 아래와 같이 제척 회피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해 처벌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제척여부	해당 있을 경우(사유)	비 고
해당없음/해당있음		

2023년 월 일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장)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9]

심사위원회 의결서

□ 공 모 명 :

의 결 내 용	
안건 :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0]

심사위원회 의결서[부적격 · 실격 작품]

☐ 공 모 명 :

심 사 기 호	심사제외 사유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1]

작품 심사의견서[1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사기호	심사의견	심사기호	심사의견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2]

심사위원 투표[1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사기호	투 표	심사기호	투 표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심사위원 투표결과표[1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사기호	결 과	심사기호	결 과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4]

2차 심사대상 선정(1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 사 기 호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5]

공모안 발표(프리젠테이션) 순서 추첨결과서

□ 공 모 명 :

발 표 순 서	심 사 기 호
1	
2	
3	
4	
5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5-16]

심사위원 투표[2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사기호	투 표	심사기호	투 표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17]

심사위원 투표결과표[2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사기호	결 과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심사위원 작품 중간 심사 결과[2차 심사용]

☐ 공 모 명 :

심 사 기 호	
결 선 작	기타 입상작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최종 심사결과표

☐ 공 모 명 :

심사결과	심사기호	설 계 자(업체명)
당선작		
최우수		
우 수		
장 려		
가 작		

☐ 심사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심사위원 성명	날인(서명)

202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최종 심사보고서

□ 공 모 명 :

입상작품	심사기호	평가사유서
	업 체 명	
당 선 작		※ 발주청을 위한 제언
입 상 작 (최우수)		
입 상 작 (우 수)		
입 상 작 (장 려)		
입 상 작 (가 작)		

202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